

## 교습비등 게시·표시

2022 년 12 월 1일 현재

학원(교습소)명		씨큐브코딩 대전둔산센터학원								
위 치		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9, 메디빌딩 3층 304호								
설립 운영자		박권택			전화번호	042-488-0490				
교습과목	수강대상	월총 교습일수	교습비 (이용료)	기타경비						합계
				모의고사비	재료비	피복비	급식비	기숙사비	차량비	
컴퓨터	초등학생	월 8일 (1,440분)	200,000원	0	20,000	0	0	0	0	220,000원
컴퓨터	중학생	월 8일 (1,440분)	200,000원	0	20,000	0	0	0	0	220,000원
컴퓨터	고등학생	월 8일 (1,440분)	200,000원	0	20,000	0	0	0	0	220,000원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※ 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구 분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	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	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	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교습 시작 전		
	교습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	
		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	
	교습기간 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	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	

비고  
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 
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